



제305회 정례회
2011. 12. 20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11월 9일
- 회부일자 : 2011년 11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 대한 자체 일제정비계획('11.7.14.)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시대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문정비가 필요함에도 개정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함으로써 현실과 불부합하게 된 조례의 조문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현실에 적합한 조례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현행 조례상의 인용법령 및 조문, 조직 명칭 등 상위법령 등과 상이한 사항에 대한 일괄개정
 -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33개 조례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동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거나 현실과 불부합한 일부 조례의

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현행 조례상에 인용된 상위 법령의 명칭 및 조문, 각종 조직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,
-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를 비롯한 총 33개 조례에 대해 조문을 보완·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만,
 - 안 제1조의 ‘기획관리실장’을 ‘기획조정실장’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2011년 12월 19일 개최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수정가결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 - 또한, 일부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개정시기에 비해 조례 정비가 매우 늦어진 바, 향후 정기적인 조례 정비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
 - ▷ 안 제6조(「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」의 개정)
 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일 : 2005. 8. 4.
 - ▷ 안 제29조(「충청북도 건축조례」의 개정)
 - 「건축법」 개정일 : 2008. 3. 21.